

<제 8차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심사 공고>

1. 자격심사 관련 일정

2018. 7. 27(금) 지원서 제출 마감
2018. 8. 10(금) 지원서 서류심사 마감, 면접대상자 및 면접 장소 통보
2018. 8. 25(토) 자격심사 면접
2018 추계학술대회(9월 중) 자격증 수여식

2. 지원서 제출 안내

1) 지원 서류: 응시원서(학회소정양식: 첨부파일 참조), 치료종결사례(학회소정양식: 첨부파일 참조, 한 회기 측면 혹은 전문가의 경우 측면의 녹음 혹은 녹화자료 포함), 최종학위증 사본, 자격증 사본

* 치료종결사례는 가능한 한 “전통적인” 인지행동치료 또는 수용전념치료(ACT)를 적용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.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(제목: 자격심사용 제출사례 및 면접시험 평가도구 관련 추가 안내문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) 지원서 제출 마감일: 2018년 7월 27일(금) 오후 6시까지 (면접대상자 통보를 위해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)

3) 지원서 접수처

- 이메일 접수: shwldo325@gmail.com
- 우편 접수: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307-2호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실 (우 38541),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자격관리간사 노승혜 앞

4) 자격심사 응시료

인지행동치료 전문가: 서류심사(5만원), 면접심사(15만원)

인지행동 치료사: 서류심사(3만원), 면접심사(10만원)

* 입금 기한: 서류심사비 7월 27일까지 입금

면접심사비(면접대상자에 한하여):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금

* 입금계좌: 국민은행 (예금주: 645901-04-351755 노승혜)

5) 문의처: shwldo325@gmail.com (자격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이메일로 하여주시고, 전화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)

3.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 안내

제 3조(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(혹은 전문의)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
- 2)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두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)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인지행동적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5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<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>

- 1) 2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2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5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2례만 인정할 수 있다.
- 2) 전문가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.
 - 가) 본 학회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
 - 나) 본 학회에서 학술발표(구연) 또는 사례발표를 하거나 워크샵을 주도하는 것
 - 다)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4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. 단, 20시간은 대학원 인지행동치료 강좌나 외부교육으로 대체가능
 - * 외부교육은 주체하는 기관에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2인 이상이 진행하는 인지행동치료 관련 및 교육 및 워크샵을 의미한다.
 - 라)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저서 혹은 역서의 대표저자(출판물은 자격위원회에서 심사)
 - 마) 전문학술지에 제 1저자나 교신저자로 인지행동치료 관련 논문을 2개 이상 게재하는 것
- 4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 수퍼비전 싸인이 있는 축어록 및 녹음(혹은 녹화)제출 혹은 한~다섯 사례 중 10회기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은 확인서 및 내용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* 주의사항 : 축어록 및 녹음(혹은 녹화)은 개인관련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
- 5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4조(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)

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

- 1) 정신건강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정신건강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(등급 불문)로서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을 가진 자(1년의 임상경력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함)
- 2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- 3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치료종결사례를 제출한 자
- 4) 본 학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및 면접을 통과한 자

<인지행동치료사 자격기준과 관련한 시행세칙>

- 1) 1년 이상의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이라 함은, 최근 3년을 기준으로 10회기 이상의 3례 이상의 개인치료를 한 경우를 말한다. 단, 10회기 이상의 집단치료는 1례만 인정할 수 있다.
- 2) 전문가의 지도감독이라 함은 전문가에게 10회기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.
- 3) 치료사 자격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본 학회의 응시원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본 학회의 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의 이수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에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5) 치료종결사례는 본 학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 회기의 축어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자격심사 및 면접의 통과는 자격심사위원회의 2/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✓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및 인지행동치료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전문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(www.kacbt.org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자격관리 이사 조 현주
자격심사위원장 김 대호 배상